

# 인천삼산1 공가주택 (총 25세대) 일반분양

##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04.25(금)이며, 청약통장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만 신청가능
- 이 주택은 당초 5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당첨자는 시설물(보일러,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음
- 이 주택은 1세대 1건만 청약가능하며, 중복청약(금회 동시공고한 청약통장없이 신청가능한 지구포함)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불가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함
- 삼산1단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재당첨 제한)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신청 할 수 없음
- 삼산1단지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재당첨 제한)에 의거하여 당첨일로부터 향후 3~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거 과밀억제권역(5년), 그 밖의 지역(3년)]

## ■ 인천삼산1 (인천시 부평구 굴포로 105 삼산타운1단지주공아파트)

[단위 : 천원]

신청 형별 [㎡]	분양동호		세대당주택면적[㎡]					공유 대지 [㎡]	주택가격(천원)				최초 입주 연도	난방 방식
			공급면적			기타공용 [이하주지정]	계약면적		계	계약금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잔금		
			전용	공용	계									
51	102	202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134,595	26,919	51,600	56,076	2005	지역
51	102	204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134,595	26,919	51,600	56,076	2005	지역
51	102	1004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143,595	28,719	51,600	63,276	2005	지역
51	102	1502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143,595	28,719	51,600	63,276	2005	지역
51	103	701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141,095	28,219	51,600	61,276	2005	지역
51	103	1405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143,595	28,719	51,600	63,276	2005	지역
51	104	306	51.83	18.7221	70.5521	14.4422	84.9943	35.7082	132,098	26,419	51,600	54,079	2005	지역
51	104	1406	51.83	18.7221	70.5521	14.4422	84.9943	35.7082	138,098	27,619	51,600	58,879	2005	지역

신청 형별 [㎡]	분양동호		세대당주택면적(㎡)					공유 대지 [㎡]	주택가격(천원)				최초 입주 연도	난방 방식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계	계약금	용자금 (국민주택기금)	잔금		
			전용	공용	계									
51	105	604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b>141,095</b>	28,219	51,600	61,276	2005	지역
51	105	1302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b>141,095</b>	28,219	51,600	61,276	2005	지역
51	106	1206	51.83	18.7221	70.5521	14.4422	84.9943	35.7082	<b>135,598</b>	27,119	51,600	56,879	2005	지역
51	110	103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b>131,095</b>	26,219	51,600	53,276	2005	지역
51	110	1001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b>141,095</b>	28,219	51,600	61,276	2005	지역
51	110	2103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b>139,095</b>	27,819	51,600	59,676	2005	지역
51	114	302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b>140,095</b>	28,019	51,600	60,476	2005	지역
51	114	501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b>139,095</b>	27,819	51,600	59,676	2005	지역
51	114	503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b>141,095</b>	28,219	51,600	61,276	2005	지역
51	114	605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b>146,095</b>	29,219	51,600	65,276	2005	지역
51	114	1206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b>143,595</b>	28,719	51,600	63,276	2005	지역
51	119	501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b>134,595</b>	26,919	51,600	56,076	2005	지역
51	119	801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b>139,095</b>	27,819	51,600	59,676	2005	지역
51	119	902	51.86	18.6794	70.5394	14.4506	84.9900	35.7082	<b>141,095</b>	28,219	51,600	61,276	2005	지역
59A	109	1501	59.99	19.9237	79.9137	16.716	96.6297	40.4697	<b>168,285</b>	33,657	59,300	75,328	2005	지역
59A	115	1502	59.99	19.9237	79.9137	16.716	96.6297	40.4697	<b>165,285</b>	33,057	59,300	72,928	2005	지역
59C	112	2202	59.99	24.5198	84.5098	16.716	101.2258	40.4697	<b>166,442</b>	33,288	59,300	73,854	2005	지역

## 분양대금 납부

- 계약금 : 계약체결시 납부
- 잔 금 : 입주지정기간('14.07.01~07.31) 내 일시납 (선납할인 미적용)
- 용자금은 공사가 기상환한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액 일시상환 가능
  - 우리 공사는 용자금을 매월 상환하고 있으므로 기상환한 원금에 따라 용자금이 변동될 수 있음 (기상환한 원금은 잔금납부시 추가로 납부하여야함)

예) 00단지 000-000호의 용자금(예정액)이 25,000,000만원이나 우리공사에서 1,000,000원을 기상환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잔금납부시 기상환된 용자금 1,000,000원을 잔금과 함께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기 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연체이율	8.5%	10%	12%

## 용자금 안내

### • 용자금이란

용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용자받은 것으로 계약자는 소유권이 전등기 시 까지 전액상환 또는 입주자 명의로 대환(채무자명의를 공사에서 계약자로 변경, 단, 은행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 • 용자금 상환방법 및 채무자 명의변경

- 용자금은 일시불로 상환하시거나 수분양자 명의로 대환하여야 하며 대환 시 이율 및 상환 방법은 대환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일시불 상환 시에도 분양계약서에 용자금액이 표시됨)
- 분양계약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차주 명의 변경)시까지의 용자금 이자를 분양자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 용자를 받는 계약자는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용자금 채무자명의를 계약자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 때 국민주택기금을 수탁관리하는 우리은행이 근거당 설정등기를 함

## 신청자격

단지	신청자격
삼산1	<b>입주자 모집공고일(2014.04.25)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b>
※ <b>세대원이란?</b>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당첨자 및 동호 결정방법

순위요건 및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는 당첨자 입회하에 카드 추천**

순위	순위요건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b>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b>
2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b>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b>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청약저축과 관련 없이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하며, <b>경쟁시 컴퓨터 추천함</b> )

**동일지역 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1·2순위에 한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구 분	해 당 사 항
무주택 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무주택기간과 세대주인정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함</li> <li>※ 예시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이 5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이 3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3년임</li> </ul>
무주택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기간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li> </ul>
세대주 인정 기간	<p>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li> <li>2.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li> </ol> <p>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li> <li>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li> </ol>

구 분	해 당 사 항
부양가족 인정기준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li> <li>•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 계 존·비속</li> <li>•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자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li> <li>•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li> </ul>

## 일정 및 장소

모집순위	접수일자	당첨자발표/ 동호추첨	계약체결 / 입주
1순위 중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인정금액 1,000만원 이상인 자	2014.05.13 (10:00~16:00)	당첨자발표 2014.06.13 (16:00)	계약 2014.06.25~06.27 (10:00~16:00)
1순위 중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인 자	2014.05.14 (10:00~16:00)		
그 외 1순위자	2014.05.15 (10:00~16:00)	동호추첨 2014.06.20 (10:00)	입주 2014.07.01~07.31
2·3순위자	2014.05.16 (10:00~16:00)		

LH 인천지역본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논현동 639-1)

▶접수 및 추첨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계약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 **선순위 접수 마감시 후순위는 접수를 받지 않음(1순위 중 1000만원·6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접수가 마감될 경우에도 다음날 후순위자 접수를 받지 않음)**
- **마감 및 후순위 접수여부 당일 19:00시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
- 공급세대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계약체결기간에 미계약자가 있을 경우 당첨자 결정시 선정한 예비순번대로 개별 통보하여 계약 체결함
- 위 주택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하지 않음
- 각 순위자는 해당 접수일자에 접수하여야 하며, **선순위자는 후순위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당첨자명단은 개별통보치 않으므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위 신청접수 기한내 미달된 세대 및 미계약된 세대에 대해서는 추후 재분양함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무주택서약을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불가함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도 접수 불가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신청시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4.25)이후 발급분에 한함]

해 당 서 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분양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청약관련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li> </ul>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맨 뒷페이지에서 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li> <li>• * 만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li> <li>•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 서명하여 신청시 제출</li> <li>•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제출</li> <li>•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li> </ul>
②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주민등록증(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발급가능, 청약저축 1, 2순위자에 한함]</li> <li>•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a href="http://www.ap2you.com">www.ap2you.com</a>) → 순위확인서 발급에서 발급가능</li> </ul>
③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④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기간, 거주지,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⑤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li> </ul>
⑥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li> </ul>
⑦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li> </ul>
⑧ 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li> </ul>

### 제3자(배우자 제외)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① 위임장    ② 신청자 인감증명서(신청자 본인발급분)    ③ 신청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주민등록증

※ **대리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당첨사실 조회방법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입주자모집 공고일 입력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중복청약 불가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불가하며,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취소 및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되며, 통장효력 상실 및 사용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 배우자 및 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상기 검색(판단)대상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아래 공부로 산정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공공기관(시장 또는 군수 등)이 인정하는 날」(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 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증여포함)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4.25)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구비사항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불가

구비서류	
① 계약금 입금증(계약서 작성 전까지 입금하여야함)	② 인감도장
③ 인감증명서	④ 주민등록증(배우자 대리계약 시 배우자 주민등록증 추가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대리계약 시 추가제출)	

※ 계약금은 [농협 351050712405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로 입금

제3자(배우자 제외)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① 위임장	② 당첨자(본인발급) 인감증명서	③ 당첨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주민등록증		
※ 대리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직권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함
- 분양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함
- 위 주택은 당초 5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후 5년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시설물(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선수금을 해당 관리소로 납부하여야 함**
- 잔금납부는 별도고지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시 안내하는 우리공사 예금계좌로 납부하여 주셔야 하며,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연체료를 부과함

- 이 주택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내 입주시는 입주일부터, 입주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계약자가 부담함**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인천지역본부 임대 공급운영부(분양전환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 이 주택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 하여야 하며, 60일 이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공간이며, 발코니 샷시가 설치된 상태에서 주택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발생될 수 있는 결로현상은 환기 등으로 예방 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함
- **기타 단지 여건 등은 반드시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공가세대 관람 안내(아래 해당시간에만 개방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삼산1(103동701호, 109동1501호) : 2014. 05. 09 (금), 14:00 - 16:00**

## 내 인천본부 안내

**■ 접수 장소 안내**

- 주 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1층 접수처 (인천논현 3단지 휴먼시아 맞은편)
- 오시는 길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도보 5분)  
(인천지하철 이용시 원인재역에서 환승)
  - 일반버스 : 112, 20, 65, 754, 754-1, 51-1, 51-2, 32
  - 직행버스 : 905, 909

<b>분양문의</b>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전화 및 문자상담)
<b>인 터 넷</b>	<a href="http://www.lh.or.kr">http://www.lh.or.kr</a>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 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 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자산 항목]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감감대상)증명, 자활근로내역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				-		
	-				-		
	-				-		
	-				-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